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6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보일	2026.8.11.(화)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9명	2명	11명
참 석	9명	2명	11명
불 참	0명	0명	0명

1. **일 시** : 2026.8.20.(목) 14:00 ~ 21:05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안병욱, 이사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 이근우, 이사 김성재, 이사 박미경, 이사 정채웅, 이사 김규탁, 이사 고길석 (이상 9명)
  - 감사 : 감사 이현필, 감사 김정호 (이상 2명)
- 불참 임원
  - 없 음

4. **배석 현황**

- 법 인 사 무 처 : 사무처장 정권철, 법인팀장 조은정, 사업운영팀장 및 안전관리팀장 고청, 기획감사팀장 박승모
  (법인팀 윤진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배석함)
- 조 선 대 학 교 : 총장 김춘성, 기획처장 최홍석, 교무처장 강혁신, 대외협력처장 조승환, 총무관리처장 김영묵, 박윤경 펩타이드 첨단신약 사업단장, 대외협력부처장 위성옥, 전략기획팀장 신용섭, 교원인사팀장 신상헌
- 조 선 이 공 대 학 교 : 총장 이응재, 기획처장 황영국, 교무입학처장 이윤기, 학생취업처장 진재식, 총무관리처장 김규철, 교무팀장 박정철, 기획예산팀장 손용준

- 조 선 대 학 교 병 원 : 병원장 최남규, 기획조정실장 신병철, 총무부장 오건진, 기획팀장 김형진, 기획팀원 이철민, 이계혁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 병원장 임성훈, 총무부장 김상수, 총무팀장 문우영

5. 심의 · 의결 안건

(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2)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3)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4)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수노동조합 임금협약(안)

(5)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6)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7)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8)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

(9)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10)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

(11)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12)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수·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13)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14)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15)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16)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17) 조선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

(18) 조선대학교 교원 특별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

(19) 조선대학교 유동자산 미수채권 대손상각(안)

(20) 조선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 운영비 교부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안)

(21) 조선대학교병원 2026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22)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23)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병원자금 선투입 승인(안)

(24) 조선대학교병원 2026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25)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규정 및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26)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고정자산 폐기(안)
(27)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2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
(29)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6. 보고 사항

(1)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2) 조선대학교 펩타이드 첨단신약 사업단 경과보고
(3) 조선대학교병원 미래 발전계획 보고

7. 회의 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정권철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이사 9명, 감사 2명 출석)하자, 안병욱 이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정권철 사무처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안병욱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u>1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 조선이공대학교 부분</u>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조선이공대학교의 조직체계 개편을 위하여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97조의2(조선이공대학교 하부조직)를 개정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전략실과 준법경영지원실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교육혁신처·기획혁신처·미래인재개발처·산학취업처·총무처로 재편하면서 각 처 산하에 직업교육혁신원·학생성장개발원·산학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관련 팀·센터를 기능 중심으로 조정하며, 아울러 일반직원 인력 운용

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산하 대학 간 인사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0조(정원) <별표 1>의 일반직원 5급 이하 정원에 대한 행정직·기술직 구분을 삭제하고 6급·7급 정원을 19명으로, 8급·9급·9급(부서기보) 정원을 11명으로 각각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김선아 이사는 기존 2팀·2센터 체제가 1팀·4센터 체제로 바뀌는 등 조직과 보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며,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소요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 조직으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정채웅 이사가 사실상 리모델링 수준의 조직 개편안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가 자료만으로는 납득되지 않으며, 기술직과 행정직을 통합하는 이유 및 교무와 입학을 분리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또한 정관 개정은 이사 3분의 2의 동의와 관할청에 보고를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개편안에 대한 수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무리이며, 행정조직 개편은 신학기 시작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미루어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김성재 이사가 신설되는 센터의 센터장 및 인력 확보 계획을 질의하였고, 황영국 기획처장이 신설 센터 3개 중 대부분은 겸직으로 운영하고 보직자 2명 정도가 증가하며 처(處)의 수는 5처 1단으로 유지된다고 답변함

④ 김규탁 이사가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의 통합과 관련, 이번 조직 개편과의 연관성을 질의하였고, 이응재 총장은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함. 아울러 이번 개편의 방점은 광주 반도체 펩이 들어오는 2030년을 대비한 신산업·반도체 분야 대응에 있다고 설명함

⑤ 박미경 이사는 향후 조선대학교와의 통합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직을 슬림화·압축하는 과도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한 차례 더 숙고할 것을 제안함

⑥ 이근우 이사는 개편안이 총장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학내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응재 총장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획처장은 처장단 회의, 센터장·팀장 회의,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고 설명함.

⑦ 고길석 이사는 직제 개편이 신입생 모집 및 반도체 분야 대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목표를 포함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⑧ 신윤숙 이사는 명칭에 '혁신'을 붙인다고 하여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육혁신처 산하 원(院)과 센터의 기능이 중복되어 보이므로 각 센터의 차별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⑨ 안병욱 이사장이 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를 좀 더 늦추는 것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자, 이응재 총장이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기 때문에 2026학년도 2학기 시작에 맞추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함

⑩ 김정호 감사는 이사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신임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을 이사회가 보류시킬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현필 감사는 직제 개편에 수반되는 수당 신설을 최소화할 것과 총장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⑪ 안병욱 이사장이 반드시 개편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유지가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 안건을 보류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조선대학교 개정 제안 부분과 조선이공대학교 개정 제안 부분의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친 뒤 종합하여 의결하기로 함>>

2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조선이공대학교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학교법인조선대

학교 정관」 개정과 연계하여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조(총장)에 총장 직속으로 대학전략실과 준법경영지원실을 두는 근거 및 각 실장의 보임에 관한 항을 신설하는 등 개편된 조직체계와 실장·처(단)장·부처(단)장·원장·센터장·팀장 등 보직 관련 사항을 규정에 명시하고, 조직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및 신설 특별사업기구를 조문으로 신설하여 명시하는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보류함

3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원노동조합 2026학년도 임금협약(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원노동조합 2026학년도 임금협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2026년 9월부터 정년계열 호봉제 교원에게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정년계열 연봉제 교원·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 교원 및 비정년계열 연봉제 교원의 연봉액을 3.5% 인상하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2026학년도에 한하여 개인별 본봉 및 월지급액의 130%로 하고 2027학년도부터는 110%로 하며, 급식비를 월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협약 사유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4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6학년도 임금협약(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6학년도 임금협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조선이공대학교지회와 2026년 9월부터 연봉액을 3.5% 인상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2026학년도에 한하여 월지급액의 130%로 하되 2027학년도부터는 110%로 하며, 급식비를 월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 등 주요 협약 사유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수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수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5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직원노동조합 2026학년도 임금협약(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직원노동조합 2026학년도 임금협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2026년 9월부터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2026학년도에 한하여 개인별 본봉의 130%로 하되 2027학년도부터는 110%로 하며, 급식비를 월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인상하고, 2026년 3월부터 운전수당·직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기타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협약 사유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기타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및 직무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 조선대학교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법인 산하 대학 간 형평성을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보류함

6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금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6년 9월부터 교원과 직원에게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의 해당 봉급표를 적용하고 급식비는 2026년 정액급식비 기준을 적용하여 월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함. 아울러, 관리업무수당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봉제 교원 수당표(<별표 14>)에 신설하고, 기타수당(<별표 12>)은 직무수당에 입시담당을 포함하고 겸직수당을 분리하며 기술정보수당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제5호 의안이 보류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직원 임금 협약 관련 개정 사항도 함께 보류하기로 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7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은 본예산액 29,890,444천원보다 1,004,828천원 증액된 30,895,27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

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30,895,272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8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이윤기 교무입학처장이 2026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인 전임교원 2명과 명예퇴직 예정인 전임교원 1명에 대하여 면직 임용을 제청하고자 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교육부·감사원·검찰청·경찰청에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조회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하며 주요 제청 사유 및 제청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면직 임용(의원면직) : [redacted]
- 면직 임용(명예퇴직) : [redacted]

논의 내용 :

① 정채웅 이사는 조선대학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률이 70%인 반면 조선이공대학교는 85%인 점을 지적하며, 명예퇴직수당은 법률상 휴업수당에 준하는 성격이므로 70%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규정 개정을 제안함. 다만 이번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음을 밝힘. 이에 이응재 총장이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교원노동조합·직원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② 김선아 이사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금(金) 포상이 금값 상승으로 인해 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응재 총장이 대안을 마

련하겠다고 답변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1.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조선이공대학교-

보고사항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이윤기 교무입학처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이공대학교 재임용: [redacted]
- 조선이공대학교 승진: [redacted]

결의사항 :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조선이공대학교)는 원안대로 접수함

<안병욱 이사장이 15:17분에 정회를 선언함>

<안병욱 이사장이 15:26분에 개회를 선언함>

1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 조선대학교 부분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미래사회융합대학이 미래사회융합학부로 학부 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직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90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1항에서 미래사회융합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미래사회융합대학 산

하 평생교육원은 부속시설로 소속을 이관하고 성인학습지원센터는 폐지하고자 하며, 미래사회융합학부의 행정 관할 및 학사 지원을 위하여 제89조(하부조직) 제6항의 교무처 하부조직에 성인학습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조선대학교 개정 제안 부분에 대해 임원 전원이 동의하고, 앞서 보류된 조선이공대학교 개정 제안 부분과 종합하여 의결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9호 의안. 조선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과 연계하여 미래사회융합대학의 학부 체제 전환 및 교무처 산하 성인학습지원팀 신설, 평생교육원의 부속시설 이관 등의 내용을 직제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함. 또한 웰에이징 3대 특성화 단과대학(바이오메디대학, 에이지테크대학, 라이프케어대학) 및 글로컬융합학부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를 담당하는 학부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2조의4(자유전공학부)의 행정 관할팀을 창의교육팀에서 기초교양교육팀으로 현행화하고자 한다며 설명함. 아울러, 민주평화연구원 산하에 김대중연구소를 신설하고 민주평화연구원장이 김대중연구소장을 겸임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신윤숙 이사가 김대중연구소 신설과 관련하여, 학술연구소를 신설할 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김대중 연구와 관련된 학술

연구교수를 선발하여 연구 실적을 축적한 후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김춘성 총장이 민주평화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비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소를 출범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구소 출범 시에는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② 김정호 감사가 김대중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고 무겁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정채웅 이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연구소 설치안만 제출된 점을 지적하고, 신규 조직 신설은 지속 가능성과 예산 문제를 검토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고 발언함

④ 이근우 이사는 5년간의 사업 종료 이후의 재원 확보 방안, 채용 인력의 처리 방안, 연구소라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함

⑤ 김성재 이사는 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연구소 설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 취지와 핵심 업무가 자료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설명이 부족하여 오해가 생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⑥ 안병욱 이사장은 김대중 연구의 필요성과 조선대학교의 기여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일단 설립할 경우 사회적·역사적 책임이 따르므로 중단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지적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김대중연구소 신설 부분만 보류하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의결하기로 정리하고 해당 연구소의 비전, 핵심 업무 및 인력 운용 계획을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다시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안병욱 이사장이 16:58분에 정회를 선언함>

<안병욱 이사장이 17:04분에 개회를 선언함>

10호 의안.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 사업 도입에 따라 기존 '라이즈(RISE)' 사업의 명칭이 '앵커'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정관」 및 「직제규정」의 명칭 변경이 전차 이사회에서 완료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지급 기준표와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구분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1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 교섭을 2025년 5월 28일 제1차 회의부터 2026년 3월 26일 제12차 회의까지 진행하여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합의하였으나,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 교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2026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3차에 걸친 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하여 2025년 9월부터 인상하고, 정근수당은 근속연수 2년 미만 10% 해당 금액, 5년 미만 20% 해당

금액으로 하며, 가족수당은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및 셋째 이상 자녀 각 1만원을 인상하고, 성과연봉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하여 M등급 기준 6.5%를 2025년 9월부터 인상(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주요 협약 사유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정권철 사무처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성과연봉 인상 요구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대학에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을 설명함. 이에 최홍석 기획처장은 성과연봉 인상의 배경으로, 2006년 7월 1일 이후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M등급 기준 성과연봉을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약 20년간 운영해 왔고, 노동조합이 삭감분 20%를 4년에 걸쳐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도분에 해당하는 6.5%를 우선 인상하고 나머지는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격차를 해소하도록 조정하였다고 설명함

② 정채웅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상호 수락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이므로 2025년도분에 해당하는 임금협약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함. 이에 김춘성 총장이 이번 사례를 감안하여 기존의 협상 방식 등을 재검토해서 향후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중앙2026 교원조정 14 조정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2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수·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수·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앞서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과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기본연봉은 강의전담교원 6%, 그 밖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3%를 인상하고, 가족수당은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및 셋째 이상 자녀 각 1만원을 인상하며, 성과연봉은 NM등급 기준 6.0%를 각각 2025년 9월부터 인상(소급적용)하고자 한다며 주요 협약 사유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수·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중앙 2026 교원조정13 조정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3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교원노동조합, 교수노동조합 및 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의 임금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정년계열 교원은 기본급 3%, 성과연봉은 M등급 기준 6.5% 인상하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원은 6.0%, 그 밖의 전임교원 3.0%, 성과연봉은 NM등급 기준 6.0% 각각 인상하고 가족수당 지급 금액, 정근수당의 적용 비율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또한 외국인 전임교원은 비정년계열 교원의 인상안을 준용하여 기본급을 3.0% 인상하고 이를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4호 의안.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과 동일하게 282,901,512천원으로 편성하되, 계정과목간 조정이 있었다고 하며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이현필 감사가 당초 장학금으로 계획하였던 재원을 자본적 지출(교육환경 개선)로 전환한 배경을 질의하자 최홍석 기획처장이 등록금 인상분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와 협의한 결과 장학금보다 교육환경 개선에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교육환경개선비로 편성하였다고 답변함, 이어 이현필 감사가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매입에 대한 수혜를 모든 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자, 최홍석 기획처장이 해당 매입비 예산으로 책걸상 및 전자교탁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282,901,512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2. 조선대학교 펩타이드 첨단신약 사업단 경과보고

보고사항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펩타이드 첨단신약 사업단 경과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박윤경 펩타이드 첨단신약 사업단장이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요 및 총사업비 규모, 화순군 화순군 제2산업단지 내 연구소 신축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함

결의 사항 : 조선대학교 펩타이드 첨단신약 사업단 경과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5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강혁신 조선대학교 교무처장이 의원면직 8명, 당연면직 12명(정년퇴직), 명예퇴직 1명 등 총 21명에 대하여 면직을 제청하고,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선발된 28명(정년계열 27명,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 1명)을 2026년 9월 1일자로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제청 사유 및 제청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조선대학교 면직(의원면직) : [redacted]
- 조선대학교 면직(당연면직) : [redacted]
- 조선대학교 면직(명예퇴직) : [redacted]
- 조선대학교 신규 임용 : [redacted]

논의 내용 :

① 김선아 이사가 노동법 분야 교원 임용 과정의 문제 여부를 질의하였고, 강혁신 교무처장이 학과 교수 10명 중 1명이 반대하고 1명이 소극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8 대 2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결원 충원 여부에 대한 학내 이견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② 안병욱 이사장이 채용 예정 인원의 충원 여부를 질의하자, 강혁신 교무처장이 당초 54개 분야를 신청받아 이사회에서 34개 분야 37명을 승인하여 공고하였으나 지원자 부족 및 응시 포기 등으로 최종 28명을 선발하였다고 답변함. 이어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130~150명 증가하는 등 대학의 위상 제고에 따라 지원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6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제안 설명 : 강혁신 교무처장이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요구)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 징계를 제청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징계 제청 : [redacted]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제청(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1.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

보고사항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산하학교 교원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강혁신 교무처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대학교 복직 : [redacted]
- 조선대학교 휴직 : [redacted]

보고 내용 : 조은정 법인팀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간호대학교 승진 및 정년보장 : [redacted]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복직 : [redacted]

결의 사항 :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는 원안대로 접수함

18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특별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교원 특별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강혁신 교무처장이 연봉제 교원의 월 봉급액 지급 호봉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지급액) 제2항의 '비연봉제 교원의 동일 호봉'을 '「교직원 보수 규정」 <별표 1> 교원봉급표상 비연봉제 교원의 동일 호봉'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특별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특별퇴직수당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7호 의안. 조선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 : 김영묵 총무관리처장이 연봉제 교원의 기본급여 산정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3조(지급액) 제2항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호봉을 적용'을 '「교직원 보수 규정」 <별표 1> 교원봉급표상 비연봉제 교원의 동일 호봉을 적용'으로 개정하고,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9호 의안. 조선대학교 유동자산 미수채권 대손상각(안)

제안 설명 : 김영묵 총무관리처장이 교육용 기본재산 무단점유자(동구 학동 621-2, 6명)에게 부과한 토지사용료 미수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40,841천원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제27조·제32조에 따라 2026학년도에 대손상각 처리하겠다고 제안 설명함. 대손상각 사유로는 2022년 외부회계 감리에서 수익 과대계상과 손상검토 누락을 지적받은 점, 2025학년도 법인 중간감사에서 이사회 승인 후 대손상각을 진행한 것을 권고받은 점 등이 있다고 추가 설명함. 아울러 대손상각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미수 채권에 대해 회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유동자산 미수채권 대손상각(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유동자산 미수채권 대손상각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0호 의안. 조선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 운영비 교부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안)

제안 설명 : 조승환 대외협력처장이 2026년 항저우 세종학당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지원금 42,000천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며, 주요 내용 및 및 제안 사유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주계약명: 세종학당 운영 업무위탁계약(항저우 세종학당)
- 계약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보험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 보험계약자: 조선대학교 / 성명: 김춘성 / 사업자 등록번호: 408-82-00516
- 피보험자: 세종학당재단 / 성명: 전우용 / 사업자 등록번호: 109-82-07761
- 보험가입금액: 42,000,000원

- 보험료: 74,190원
- 보험 회사명: SGI서울보증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 운영비 교부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2026.7.1.~ 2027.8.31.) 동안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및 갱신을 승인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안병욱 이사장이 18:15분에 정회를 선언함>

<안병욱 이사장이 18:50분에 개회를 선언함>

21호 의안. 조선대학교병원 2026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제안 설명 : 최남규 병원장이 2026년 5월부터 진행된 노사 교섭이 약 10여 년 만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없이 무분규로 타결되었다는 점과, 임금은 노동조합의 6.36% 인상 요구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3.5% 인상으로 합의하여 2026년 3월 1일자로 적용하고, 단체협약은 상위 직급 신설을 제외한 하위직 정원 확보 노력, 상향평가를 포함한 다면평가 시범 사업의 우선 시행 및 사후 노사 협의, 야간근로 일수 단축 요구 불수용 및 야식비 6,000원에서 7,000원으로의 인상,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유사산 휴가 등 법률 개정 사항의 수용, 주 선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선임수당 신설 등으로 합의하였으며, 인력은 증원 4명(격리팀 1명, 신생아중환자실 2명, 진단검사예약팀 계약직 1명)과 충원 12명(중환자실 8명, 핵의학검사팀 1명, 영상의학팀 3명)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 등 주요 합의 사유 및 합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안병욱 이사장이 인력 증원·충원에 따른 비용을 질의하였고, 최남규 병원장은 충원 12명은 1인당 연 6천만원 수준으로 약 6~7억원이 소요되나 기존 정원 내 미충원 및

퇴직 대체 인력이므로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으며, 증원 4명은 월 야간근로 7일 이하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고 답변함.

② 안병욱 이사장이 타 대학병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약이 체결된 배경을 질의하였고, 최남규 병원장은 20여 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일관되게 준용해 온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답변함. 안병욱 이사장은 교섭에 임한 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병원 2026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2026년도 임·단협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2호 의안.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 : 최남규 병원장이 2026년 노사 임금 협약 내용을 보수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직원의 임금 및 진료연구보조비를 3.5% 인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선임자로 지정되어 책임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월 30,000원의 법정 선임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전공의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3호 의안.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병원자금 선투입 승인(안)

제안 설명 : 최남규 병원장이 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교부 예정이던 국고 291억원을 2026년 137억원과 2027년 154억원으로 분할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6년 확보 예

산으로는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 유지 간접비 12억원과 2027년 공사 재개 시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2억원 등 14억원 이상을 병원이 추가 부담할 우려가 있으며, 국고 추경 확보와 감리업체 대금 지급 시기 연기 등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7년 1월 중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받은 것을 근거로 병원자금 100억원을 선투입한 후 2027년 1월 국고 교부 시 전액 회수하고자 한다며 주요 제안 사유 및 제안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정채웅 이사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지연되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예산 교부 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법인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② 신윤숙 이사는 선투입한 100억원의 정산 서류상 집행 시기와 국고 보조금 수령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고, 최남규 병원장이 지출결의서 등 증빙 자료를 보존하여 질병관리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예산 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이어 이계혁 기획팀원이 현재 회계상·법률상 문제 여부에 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가 곧 통보될 예정이라고 보완 설명함

③ 김정호 감사는 국가 예산 사업에서 자금을 선투입하고 사후에 교부받는 사례를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였고, 이현필 감사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나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안병욱 이사장이 사전컨설팅 결과 내용에 감사원의 이견이 없을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병원자금 선투입 승인(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적정할 경우 승인하기로 의결함

24호 의안. 조선대학교병원 2026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제안 설명 : 최남규 병원장이 자금 예산액 420,212,395천원보다 13,090,790천원 증액된 433,303,185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정채웅 이사가 외래수입 감소 사유를 질의하였고, 병원 측은 예산 편성 이후 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진료일이 하루 줄어들면서 약 4억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답변함

② 신윤숙 이사는 장례식장의 수입이 15억원인 데 비하여 지출이 19억원으로 연간 약 4억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유지 여부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최남규 병원장이 장례식장을 폐지하고 안치실만 유지하는 방안과 외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직원 재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이에 고길석 이사가 폐지보다는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 병원의 손실 없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남규 병원장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병원 2026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433,303,185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25호 의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규정 및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 : 임성훈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이 2026년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원 및 전공의의 임금을 3.5% 인상하고 임상교원의 진료연구보조비도 직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하여 3.5% 인상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2026년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 선임수당 월 30,000원을 신설(중복 선임 시 1건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규정 및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규정 및 전공의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6호 의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고정자산 폐기(안)

제안 설명 : 임성훈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 등)에 근거하여 노후·고장·수리불가 등의 사유로 진료 및 행정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구축물 1건과 의료장비 8건 등 총 9건(취득금액 155,950천원, 잔존가액 7,606천원)을 폐기하고자 한다며 주요 제안 사유 및 제안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고정자산 폐기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7호 의안.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제안 설명 : 조은정 법인팀장이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규정」 제4조의2(학교장 임용) 및 제12조(전보계획)에 의거하여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교장 천일석을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장 김종채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교장으로 각각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전보 임용하고자 한다며 주요 제안 사유 및 제안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28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

제안 설명 : 조은정 법인팀장이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및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정관」 제57조(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조직 및 관할) 등 관련 법령과 임원 및 보직 변경 사항에 따라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주요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3. 조선대학교병원 미래 발전계획 보고

보고 내용 : 최남규 조선대학교병원장이 새병원 건립,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건립, 주차타워 및 부대지원시설 개발 등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① 새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고길석 이사는 정문 부지의 가용 면적을 질의하고, 교수 설문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군공항 이전 부지 인근의 반도체 특화단지는 정주 여건으로서 의료시설이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으므로 법인·대학·병원이 함께 광주시와 협의하여 부지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수십 년간 원점을 반복해 온 만큼 이번에는 건립 부지를 명확히 결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김규탁 이사는 감염병전문병원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정문 부지가 효율적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남규 병원장은 정문 부지에 500~600병상 규모로 건립할 경우 인근에 신축되는 1,000병상 규모

타 대학병원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새병원이 건립되면 기존 병원은 노인전문·만성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답변함

③ 정채웅 이사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만성적 적자 구조와 타 병원의 사례를 들어 현재 추정 사업비 4천억원이 실제 착공 시점에는 6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적 부담과 현실성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함

④ 김성재 이사는 조선대학교가 광주·전남 지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 의료 인재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⑤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이근우 이사는 새병원 이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투자를 보류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하였고, 최남규 병원장은 새병원 건립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현 주차타워는 안전진단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교육용 부지인 주차타워 및 제2주차장 부지(약 90억~100억원)를 병원이 매입해야 할 가능성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고 답변함. 박미경 이사와 김정호 감사는 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마련하여 다시 제안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⑥ 안병욱 이사장이 현재 조선대학교병원의 여건상 파주 종합병원 건립과 새병원 건립을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병원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인근 부지 확보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안함. 이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건립에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외부 컨설팅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기로 함

결의 사항 : 조선대학교병원 미래 발전계획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29호 의안.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안병욱 이사장, 김규탁 이사, 고길석 이사를 선정하기로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병욱 이사장, 김규탁 이사, 고길석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함

폐회 선언

폐회 선언 : 안병욱 이사장이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결 의 사 항】

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2. 조선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보류하다.

3.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수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수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5.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보류하다.

6.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7. 조선이공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30,895,272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10.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보직자 직책수행판공비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세칙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중앙2026 교원조정14 조정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조선대학교 2025학년도 교수·교육중심교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중앙2026 교원조정13 조정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282,901,512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15.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6.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제청(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7. 조선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8. 조선대학교 교원 특별퇴직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특별퇴직수당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9. 조선대학교 유동자산 미수채권 대손상각(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유동자산 미수채권 대손상각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0. 조선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 운영비 교부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2026.7.1.~ 2027.8.31.) 동안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및 갱신을 승인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1. 조선대학교병원 2026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2026년도 임·단협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2.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전공의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3.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병원자금 선투입 승인(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적정할 경우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24. 조선대학교병원 2026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433,303,185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5.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규정 및 전공의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직원 보수규정 및 전공의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6.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고정자산 폐기(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고정자산 폐기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7.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산하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29.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병욱 이사장, 김규탁 이사, 고길석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6. 8. 20.

이 사 장	안병욱	안병욱	
이 사	김선아	김선아	
이 사	신윤숙	신윤숙	
이 사	이근우	이근우	
이 사	김성재	김성재	
이 사	박미경	박미경	
이 사	정채웅	정채웅	
이 사	김규탁	김규탁	
이 사	고길석	고길석	
감 사	이현필	이현필	
감 사	김정호	김정호	